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32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7.

발 의 자 : 강득구 · 김주영 · 이주희
이학영 · 한민수 · 정일영
위성곤 · 최혁진 · 박 정
박지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·가공·공급하는 경우,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의 103분의 3,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음.

그런데 수출용 폐자동차는 완차수출 시 경제적 실질이 중고자동차와 동일함에도 단순 재활용폐자원으로 분류되어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. 아울러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 역시 법령에 따라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거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타 업종(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)에 비해서도 낮은 공제율(103분의 3)을 적용받고 있어 과세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수출용 폐자동차의 공제율을 중고자동차와 동일한 110분의 10으로 상향하고,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 108조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”를 “재활용폐자원, 중고자동차 및 폐자동차”로, “중고자동차”를 “중고자동차 및 폐자동차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중고자동차”를 “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폐자동차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”를 각각 “재활용폐자원·중고자동차 및 폐자동차”로 한다.

3.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: 108분의 8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)

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8조(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) ① <u>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</u>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, <u>중고자동차를</u>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.	제108조(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) ① <u>재활용폐자원, 중고자동차 및 폐자동차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중고자동차 및 폐자동차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중고자동차</u> : 110분의 10	2. <u>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폐자동차</u> -----
<신 설>	3. <u>수출용 외의 폐자동차</u> : 108분의 8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<u>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,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, 매입세액 공제방법,</u>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③ ----- -----<u>재활용폐자원 · 중고자동차 및 폐자동차</u>----- -----<u>재활용폐자원 · 중고자동차 및 폐자동차</u>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-